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84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24.

발 의 자 : 박완주 · 정성호 · 김정우

김해영 · 전혜숙 · 윤관석

박남춘 · 임종성 · 설 훈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
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·파쇄·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
음.

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·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
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
더미에 작업자·작업일·작업약품 등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랜
시간 방치되면 위치 파악과 사후처리 여부를 알 수 없고, 지역방제대
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훈증 처리 방제 결과를 보고하지
않고 있어 관리·감독이 부실한 실정임.

이에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,
작업일, 작업자, 처리약품 등을 기록·관리하고,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
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

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훈증 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, 작업일, 작업자, 처리약품 등을 기록·관리하고,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 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기록·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방제방법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방제방법) ① ~ ④ (현 행 과 같음) <u>⑤ 제4항에 따른 훈증 처리 방 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 련번호, 작업일, 작업자, 처리약 품 등을 기록·관리하고, 지역방 제대책본부장이 훈증 처리 방 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 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⑥ 제5항에 따른 기록·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⑦ (현 행 제5항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
⑤ (생 략)	